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17년 05월 22일

사북읍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길**	길** 1989-01-29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-05-22